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13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 김교흥 • 이학영 • 서영교

김성환 · 김동아 · 소병훈

신영대 • 한정애 • 권향엽

허성무 • 이재강 • 강선우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특허법」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(서 면, 구두)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.

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·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.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, 글로 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 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.

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54조의2).

법률 제 호
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
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4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국가전략기술·첨단전략사업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4조의2(전문심리위원) ①	제154조의2(전문심리위원) ①
심판장은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	
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	
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	
<단서 신설>	가전략기술 · 첨단전략사업에
	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
	하여야 한다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